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회피 규정 신설〉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26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회피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현회의원 등 74인
2. 제 안 일 : 2024. 6. 13.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회피 규정 신설

□ 개정안은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시,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 <u>대통령이 제1항제8호와 관련한 법률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u>
⑤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 -----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¹⁾에 대해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자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공정성 의심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제5조2)에서는 회피 신청 대상이 되는 직무를 명시적으로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 해당 법률안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³⁾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및 재의요구권은 헌법⁴⁾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바,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및 재의요구권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위 규범인 법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그리고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대통령이 제1항제8호와 관련한 법률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로 확정되기 전의 절차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의 “법률”을 “법률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률로써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법률안을 재의 요구하는 경우,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법률로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4)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그리고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에서 재의요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하위규범인 법률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인정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개정안의 “관련한 법률”⁵⁾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이 국회규칙 등으로 위임 가능⁶⁾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7

5) ③ 대통령이 제1항제8호와 관련한 법률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안 제5조제3항)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2.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